

한국체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제정 1999. 3. 23. (규칙 제279호)

개정 2005. 12. 5. (규칙 제468호)

2010. 3. 10. (규칙 제531호)

2011. 5. 26. (규칙 제557호)

2015. 6. 25. (규칙 제674호)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본 교육원이라 한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조직) ①본 교육원에는 평생교육부와 체육지도자연수부를 둔다.

②본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되 총장이 임명하고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본 교육원에 각 부장을 둘 수 있으며, 전공 관련 교수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평생교육부는 학위과정 및 학점인정과정과 비학위과정을 두며, 비학위과정으로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생활체육 프로그램
2. 교양 및 취미 교육 프로그램
3. 성인건강 교육 프로그램
4. 자격취득 교육 프로그램
5. 위탁교육 프로그램
6. 스포츠캠프
7. 국제 스포츠 연수 프로그램
8. 기타 지역사회 주민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⑤체육지도자연수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서 지정한 연수를 운영할 수 있다.

⑥삭제

제 3 조(운영위원회) ①본 교육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 및 연수의 기본방침 수립
2.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3.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4. 규정의 개정 및 폐기에 관한 주요 사항
5. 기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조(교육 및 연수기간) 본 교육원의 교육 및 연수과정의 대상자와 교육 또는 연수기간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지원자격 및 선발) ①평생교육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한 특별교육과정에 대하여는 학력, 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체육지도자연수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다.

③교육생의 선발방법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다만, 체육지도자 연수생 선발방법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다.

제 6 조(교육 및 연수과정) ①평생교육원의 설치과정 및 학습인원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평생교육부의 제1항의 설치과정과 학습인원 및 제7조의 학습비 등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③체육지도자연수부의 교육 및 연수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연수 업무지침에 따라 정한다.

제 7 조(교육비) ①평생교육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평생교육원의 학습비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학습

비 반환규정에 따른다.

③체육지도자연수부의 교육 및 연수비에 관한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연수 업무지침에 따라 정한다.

④평생교육원 학습비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 대상 및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평가) 원장은 교육(연수)생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교육평가를 할 수 있다.

제 9 조(수료 및 수료증교부) ①평생교육원의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70%이상을 이수한 자로 하며, 체육지도연수부의 수료에 관한 사항은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은 15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③원장은 교육 및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 10 조(자치회)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마다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 11 조(상벌) ①학습태도와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연수)생에게는 수료 시 포상할 수 있다.

②교육(연수)생은 교육(연수)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농성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③교육(연수)생이 교육 및 연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12 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평생교육부 회계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학회계로 한다.

②평생교육부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③원장은 매년 12월중 다음해 예산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육지도자연수부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연수 업무지침에 의거 정한다.

④삭제

⑤본 교육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대학회계로 하며, 분임계약관 및 분임출납관을 둘 수 있다.

제 12조의2(운영경비) 본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학습비, 한국체육대학교 보조금,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 시),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3 조(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부와 체육지도자연수부 별로 따로 정한다.

부 칙 (1999. 3. 23 규칙 제27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2 규칙 제32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26 규칙 제35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변경규정 전 경기지도자연수원, 경호경비교육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전 성인건강교실 등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 교육과정 운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5. 12. 5 규칙 제46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0. 규칙 제53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6. 규칙 제55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5호, 2015. 6.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부터 적용한다.

<별표>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